

양돈자조금

구제역 관련 양돈농가 참고자료

2011. 02. 10 현재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 본 자료집은 2011년 2월 10일 기준으로 제작된 것으로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라 다소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집은 양돈자조금 사업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대한양돈협회 구제역 방역 대책위원회

소 속	성 명
대한양돈협회	김건호 위원장
한별팜텍	이승윤
(주)선진	고상익
이지바이오	김현일
발라드동물병원	김진선
(주)비전축산센타	김준영
인터벳동물약품	김명휘
서울대학교 동물생명	김유용
전북대학교 수의대	김원일
맥스피드	김형린
대한양돈협회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최성현
대한양돈협회	정병일

구제역 관련 양돈농가 참고자료[비매품]

2011. 2. 10일 초판 1쇄 발행

- 제작: 대한양돈협회 · 양돈자조금 ● 발행자: 대한양돈협회
- 전화: 02)581-9751 ● 팩스: 02)581-9768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1-19 3F 대한양돈협회

* 본 자료집은 구제역 관련 양돈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자료집입니다.

* 본 자료집은 2011년 2월 9일 기준으로 제작된 것으로 구제역 상황과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라 다소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1.	살처분 농가 보상안내	3
2.	가축 재입식 요령	8
3.	이동제한 농가(수매 대상) 지원안내	10
4.	이동제한 농가(역학조사 관련) 지원안내	12
5.	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독요령	13
6.	부분 살처분농장의 돼지 관리요령	21
7.	이동제한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요령	22
8.	살처분 농장 청소 소독요령	24
9.	돼지 구제역백신 예방접종 프로그램	32
10.	살처분 농장 직원 재취업 요령	33
11.	전국 예방접종에 따른 정책의 변화	34

1

살처분 농가 보상 요령

1. 살처분 돼지 등의 보상금 지급

1.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 1)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주사, 주사표시, 약물목욕,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 2)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하여 살처분한 가축
- 3) 오염이 의심되어 소독 또는 매몰한 배합사료, 조사료, 건초, 볏짚 등 (이하 “오염물건”이라 함)

2. 살처분 가축 보상 금액: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해 각 시군 평가반에서 결정

<일반적인 보상금 지급액 결정방법>

가. 자돈: 30kg 기준 자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적정 지급

나. 후보돈, 모돈, 임신모돈: 후보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계산식에 의해 지급

－ 모돈 가격 : 후보돈 가격 + 종부시까지 비용

－ 임신모돈 가격 : 모돈가격 + 임신중인 태아가격(10두 기준)

다. 육성·비육돈: 살처분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율 69.7% 적용

－ 단, 2011. 1. 15 이후부터는 전년 평균가격에 30%를 더한 가격(5,502원/kg)을 상한가로 함(관련 : 동물방역과-1070(2011.01.15))

라. 웅돈·종돈: 구입증빙에 따라 실거래가 지급

※모돈 100두 농장 단계별 돼지 구성비율 및 보상가격 추정 (2010년 11월 기준)

=> 아래의 표는 살처분 농가의 보상가격 산출을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살처분시 보상가격 산출은 시군과 적극 협의하고, 살처분 시점의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모돈 100두 주간관리, 모돈회전을 2.32회전, 포유두수 10두기준 (예시)

구분	체중상한구성비율		두수	두수 산출근거	단가	금액 (자돈 평균체중적용, 30kg가격+(비육돈 -30kg가격)/체중차)
임신 모돈	6.7%		77	임신한 돼지 77두	1,103,693	84,984,361
모돈 포유 모돈	1.6%		18	4.5복*4주=18복	743,693	13,386,474
비임신돈	0.4%		5	모돈5두 이유후 임신대기	743,693	3,718,465
후보돈	0.3%		4	모돈두수100두*교체율 40%/후보돈 편입비율85%/12주=4두	600,000	2,400,000
웅돈	0.2%		2	시가	950,000	1,900,000
자돈 1.포유자돈 (생시~4주)	7.5kg	15.6%	180	포유두수:(실산자수 10.5두+이유두 수 9.5두)/2*4주포유*4.5복=180두	85,000	15,300,000
2.이유후자돈 (5~8주)	18kg	14.8%	171	180두/4주*4주-폐사두수(5%, 9 두)=171	112,500	19,237,500
3. 자돈말기 (9~10주)	30kg	7.3%	84	171두/4주*2주-폐사두수(2%, 2 두)=84	140,000	11,760,000
육성돈(11~17주)	60kg (45kg)	24.9%	288	84/2주*7주-(폐사두수 2%, 6 두)=288	170,938	49,230,144
비육돈(18~25주)	110kg (85Kg)	28.2%	326	288두/7주*8주-폐사두수(1%, 3두) = 326	253,438	82,620,788
합계		100.0%	1155	두당 평균 24만 6천원		284,537,732

* 시가적용과정에서 변동가능성이 있음.(비육돈 110kg 30만5천원, 30kg자돈 14만원 기준)

* 지육가격 3960원*110kg*69.7%=305천원

* 자돈 두당 보상단가 상한금액(안):

구분	체중상한	상한금액	산 출 근 거
1.포유자돈(생시~4주):	7.5kg	85,000	포유자돈 85천원(비육돈생산비의 30% 72천원+13천원추가)
2.이유후 자돈(5~8주):	18kg	112,500	포유자돈(85천원)+[자돈자격(140)-포유자돈(85)]/2
3.자돈말기(9~10주):	30kg	140,000	11월 실제거래 가격

가. *(갓난돼지)자돈 생산비: 비육돈 생산비의 30%+13천원=85,000원
 -2003년이후 자돈 생산비와 번식돈 사육비를 조사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비육돈, 생산비, 사육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산출
 *2009년 자돈 생산비는 비육돈 생산비 239천원의 30%인 72천원에 포유기 관리비 13천원=85천원 적용

	자돈(a)	비육돈(b)	비율◎
2000년	46	152	30.3%
2001년	47	156	30.1%
2002년	47	155	30.3%

나. 육성돈 구간, 성돈 가격산정 방법

체중	규정
45kg	30kg기준가격+[(당해체중-30kg)*구간 증체 kg당 가격]

* 구간 증체 kg당 가격: 자돈(30kg)에서 비육돈(110kg) 구간 사이의 증체 kg당 지육가격

다. 번식돈 사육비: 비육돈생산비의 550%적용

	번식돈(a)	비육돈(b)	비율◎
2000년	894	162	551.9%
2001년	911	167	545.5%
2002년	928	166	559.0%

라. 노페돈 가격: 생체중량(평균200kg)*전국평균가격*60%(지급률)

마. 모돈 가격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평균감가상각비

5-1	후보돈 구입비	: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5-2	모돈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후보돈가격+종부전까지사육비)-모돈 도태가격]*20%
5-3	종부전까지사육비	: 번식돈사육비/365*75일
5-4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	: 후보돈구입비+모돈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사육비
5-5	감가상각비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페돈가격)*모돈내용연수(3년)
5-6	평균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모돈평균사용연수(1년)
5-7	임신태아가격	: 자돈생산비*평균이유두수(10두)평균임신기간율(50%)
5-8	*모돈(비임신)	: 종부전 후보돈평가액-평균감가상각비
5-9	*모돈(임신돈)	: 모돈(비임신))+임신태아가격

3. 오염물건 보상액: 평가반에서 제시한 금액

(단, 발생농장은 평가금액의 5분의 2를 지급) (관련 : 구제역SOP 68P)

4. 보상금 지급 절차: 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서를 발급 ⇒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보상금 신청 ⇒ 시·도에 전달 ⇒ 보상금 지급

관련 : ①구제역 SOP 68P ②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요령 제4조 평가액 상한선

2. 살처분 농가의 생계 지원대책

항목	지 원 내 역	지급시기
생계안정자금	○살처분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국비 70%, 지방비 30%) -사육규모에 따라 지원: 500두 이상이면 상한선 1,400만원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3개월분 선지급
가축입식자금	○살처분 농가에서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 지원(융자 100%) - 농가별 살처분보상금 한도 내에서 입식 *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입식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및 이자감면 ○사료구매자금이자보전 상환기간 연장 -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학자금면제	○피해농가 자녀 (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교과부)	-
소득세공제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

3.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조건

□ 신고기준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신고 : 감액없음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 : 20%감액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지난 후 신고 : 40%감액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발견한 경우 : 60%감액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명령 등 조치이행 기준

-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검사·주사·투약 또는 주사·투약 금지
- ② 소독 실시(소독실시기록부 확인)
- ③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 제한
- ④ 살처분 명령

가. ①~④항 모두 이행 시 : 감액 없음

나. ①~④항 3개 이행 시 : 20% 감액

다. ①~④항 2개 이행 시 : 40% 감액

라. ①~④항 1개 이행 또는 전부불이행 시 : 60% 감액

※ 신고기준과 조치이행 기준에 따른 감액요인이 중복될 경우 감액이 큰 경우를 적용하되, 최대 60%까지 감액 가능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48조, 시행령 11조

동물방역과-870(2011.01.12)

2

예방접종후 가축의 재입식 요령

1. 입식의 준비

- 가. 시장, 군수는 [별표1]에 따라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농장의 소독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주택·관리사·축사내외·진입로·운동장·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세척 및 소독실시 실태, 오염 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입식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입식가축의 선정

입식을 하는 가축은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가축(2회 접종 후 3주가 지난 가축 또는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으로 한다.

3. 입식의 방법

농장의 소유자등은 입식가축의 구입장소·구입일자·운송방법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입식의 허용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처리, 소독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입식시험 없이 입식 허용([관련 : 동물방역과-2126\(2011.01.31\)](#))

- 입식 신청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10일 이내 현지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
- 입식 전 소독 조치 등 확인

[별표1] 구제역 발생농장 등 입식 단계별 방역요령(안)

단계별	추진요령
1단계 (입식준비)	◦관할 시·군에서 입식에 따른 제반사항 계획수립 ◦입식 전 발생농장 등에 대해 입식과 관련한 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지도·교육 실시 - 방역조치요령, 협조사항 및 세부추진계획 등 설명
2단계 (농가소독)	◦입식전 발생농장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실시 - 소독대상 : 축사내외, 진입로, 운동장, 농장내 사택, 축산기구 등 농장과 관련되는 모든 것 ※ 기본적으로 구제역 SOP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의거 소독을 실시하되 축사바닥, 갈라진 틈 등에 존재하는 분변 및 오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브러쉬, 수세미 등을 소독액에 담구어 가면서 세척·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축사 천장 등은 고압세척기(분무기)를 이용하여 축사가 소독액에 완전히 젖도록 하고, 축사내는 포르말린 훈증소독 실시
3단계 (입식가축)	◦가축 선정 및 구입 - 구매농가로부터 구제역 백신이 접종된 돼지를 선정 및 구입
4단계 (입식농장점검)	◦가축 입식전 발생농장 등에 대한 점검실시 -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청소·소독상태 확인점검

※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도 발생농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이상여부를 확인

※ 상기 요령은 (사)대한양돈협회 구제역 방역대책협의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사)대한양돈협회 구제역방역대책협의회

3

이동제한 농가(수매대상) 지원 요령

1. 수매 시기

관련 : 동물방역과-2126(2011.01.31)

	경계지역	위험지역
수매개시	- 예방접종 1주후 수매	- 예방접종 2주후 수매
검사방법	- 발생농장: 임상검사+ 혈청검사(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사별 샘플검사) - 비발생농장: 경계지역(임상검사), 위험지역(혈청검사, 농장당 16두)	

2.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관련 : 동물방역과-2620(2011.02.10)

- ☐ 축종별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예방매몰 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시·군
- 위험·경계지역 구분하지 않고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해제
- ☐ 최근 2주간 발생농장이 없는 시·군
- 축종별 1차 접종경과(경계지역 2주, 위험 3주)후에 임상·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
- 발생농장 : 임상+혈청검사 (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방별 3두)
- 비발생농장 : 임상+혈청검사 (경계지역은 대상 농장의 15%, 위험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
- ☐ 신규발생 시군 또는 기 이동제한 해제 시군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방역조치
- 2차 접종 1주 경과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하고 종돈, 모돈, 비육돈 구분없이 감염된 개체만 매몰
-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 ①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및 반경 3km내 돼지농장에 한하여 실시, ②매몰범위는 현행과 같이 종돈, 모돈은 감염된 개체, 비육돈은 1차 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 14일 미경과시 돈사 또는 폐쇄된 돈방단위로 매몰
- * 발생농장은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 혈청검사후 해제

3. 수매 가격

관련 : 축산경영과-6940(2010.12.09)

수매 대상	수매 가격	비 고
비육돈	수매직전 도매시장 5일 평균 지육 경락가격(E등급 제외, 박피) × 생체중 × 69.7%	100kg 이상
중돈	시군 및 가축개량기관에서 조사한 최근 6개월간의 순중돈(종모돈, 종빈돈) 및 F1 모돈의 평균 분양가격	100kg 이상

※ 위축돈: 수매 차량 당 4% 이하 수매물량으로 인정

※ 중돈: 종축등록기관에 혈통등록증명서 또는 번식용씨돼지등록증이 있는 돼지

4. 수매농가의 생계 지원대책

항목	지 원 내 역
경영안정자금	○이동제한지역내 농가, 도축·가공장 등 경영자금 지원(융자 100%) -농가: 최고 5천만원 이내 지원 -사육두수 × {224천원(09년 경영비) × 이동제한일수/365} -신청기간: 1월 ~ 최종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연리 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희망시 이동제한 기간중에도 해제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지원 가능액의 50%적용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및 이자감면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상환기간 연장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학자금면제	○피해농가 자녀 (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교과부)
소득세공제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4

이동제한 농가(역학조사 관련) 지원 요령

1. 과체중 돼지 차액 보전

2011.1.14이후 적용

1. 차액보전 대상:

- 1) 이동제한 조치된 역학 농가 중 차액보전을 희망하는 농가
- 2) 생체중 120kg 이상 과체중 돼지
- ※ 농가별 이동제한일을 감안하여 총 사육두수의 8%이내 차액보전
- ※ 비육돈 위탁 농장 및 비육돈 전문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총 사육두수의 20%이내 차액보전

2. 차액 보전(수매) 기간: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일주일간

3. 차액보전 금액: 이동제한지역 내 수매가격 - 지육경락가격(지육대금 + 부산물 - 도축제비용)

- ※ 이동제한지역 내 수매가격: 비육돈 수매(수매일 직전 전국 도매시장 · 공판장 5일 평균가격, 단 토 · 일 · 공휴일 거래 제외) 가격 적용

4. 신청절차: 차액보전 희망 농가는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지자체 돼지 출하 신청 ⇒ 지자체에서 출하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지정 ⇒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에서 신청한 차액보상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농가별 계좌번호에 차액보상액 입금

2.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 내역

항목	지 원 내 역
예방 접종 과정에서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가 발생할 경우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 가축에 대하여 시가의 80% 보상
예방 접종 후 유,사산 또는 폐사가 발생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예방접종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시가의 80% 보상

1. 구제역바이러스의 특성과 소독제의 선택

피코나바이러스(Picornaviridae Aphthovirus)에 속하며 RNA 바이러스로서 외피막(envelope)이 없다. 이 바이러스는 산도(pH) 7.2~7.6에서 가장 안정성이 크며 온도가 4℃ 이하라면 pH 6.7이하 또는 pH 9.5이상에서도 상당기간동안 살아남을 수 있으나 pH 5.0 이하 또는 pH 11.0 이상에서는 급속히 사멸하고 56℃에서 30분이면 완전히 파괴된다. 햇빛은 구제역바이러스의 감염력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햇빛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조함과 온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파괴될 수 있다. 상대습도 60% 이하에서는 생존력이 급속히 떨어진다.

이런 특성이 소독약제의 선택에도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구제역바이러스는 외피막이 없기 때문에 주로 지방성분으로 구성된 외피막을 파괴하는 세정제와 계면활성제는 소독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독약의 선택시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인 사항 외에도 소독 대상물질, 소독 범위, 주위 환경, 가격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구체적인 소독요령

가. 소독전 청소

유기물(분변, 오줌, 사료 등)은 각종 병원성 미생물의 서식처가 되며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므로 소독 전에 철저히 청소를 한 후 소독하여야 효과가 좋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농가 또는 의심농가에서 박멸소독 할 때에는 청소전에 먼저 소독을 하여 오염원을 없애야 한다.



나. 세척 및 소독

-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축사 천장, 벽 및 바닥을 적신 후 브러쉬, 수세미 등으로 문질러 분변, 오물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세척한 다음, 완전히 건조되면 소독약을 살포한다.
- 이 때, 분무기를 이용해서 축사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소독약을 뿌린다. 소독약은

약제별로 다르긴 하지만 권장희석배수로 비침투성 표면의 경우 1㎡당 약 100 ml의 소독제를 살포하고, 콘크리트나 목재와 같은 침투성표면의 소독시에는 1㎡당 약 200ml~300ml의 소독제를 살포하며 보통 10~30분이 지나야 완전한 효과가 있으므로 소독 즉시 물로 세척하지 말고 젖은상태로 접촉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한다.

3. 효과적인 소독약(성분)의 종류

－ 4급암모늄, 요오드류, 크레졸 및 페놀류는 구제역에 효과 없어...

구제역에 대한 소독제는 편의상 세정제·계면활성제, 알칼리제제(염기제제), 산성제제, 산화제 및 알데히드제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계면활성제인 4급암모늄 등은 앞서 설명한 대로 구제역바이러스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구제역에 효과적인 다른 소독제 성분과 4급암모늄염을 혼합한 소독제는 소독효과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요오드류, 크레졸 및 페놀류의 소독제에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이런 약제는 구제역에 권장하지 않는다.

OIE, 미국 농무성, 호주 농무성 등에서 구제역 소독에 권장하는 소독제 성분은 아래와 같으며 그 희석비율은 단일성분이 나타내는 소독효과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여러 성분이 복합된 소독약을 사용할 때에는 희석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를 따라야 한다.



가. 소독제의 일반적 성질

대부분의 소독약은 저온에서 소독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온이나 수온이 낮으면 농도를 높여주어야 하지만 알데히드류 소독약은 20℃ 이상이면 오히려 효력이 떨어진다. 염소제는 15~20℃에서 가장 효력이 좋고 (따뜻하게하여 사용) 저온이나 고온에서는 소독력이 낮아진다.

나. 소독제의 국내 허가현황 및 성분별 특성

성분별 소독제의 국내 허가현황은 "구제역/소독정보 中 소독약품"정보란의 "구제역 유효소독제의 국내 허가 현황"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염기제제** : 탄산소다, 가성소다 등이 있으며 값이 저렴하여 대단위 소독에 적합하다. 유기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소독효과가 좋기 때문에 오물이 많은 축사 내외부, 뜰, 차량, 하수구, 쓰레기, 배설물 등의 소독에 이용한다. 또한, 눈이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사용농도 : 탄산소다(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4%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2%

– 주의사항 : 부식성이 강하여 차바퀴가 아닌 차체에 사용하면 도색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며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산성제제** : 구연산(citric acid), 초산(acetic acid) 용액 등으로서 보통 단일제제보다 복합제품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 구연산(citric acid) 용액 : 0.2 ~ 2% 농도로 사용하며 사람과 의복에도 안전하다. 효력은 좋은 반면 침투력이 약하므로 유기물이 있을 경우에는 효과가 매우 낮아진다. 세정제 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복합제로 사용하면 효과가 높아진다.

○ 초산(acetic acid) 용액 : 2%(식초는 초산 4%에 상당)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효과 및 주의사항은 구연산과 유사하다.

○ 복합산성제제 : 복합염 및 산류로 구성된 소독제로서 단일제제보다는 복합제가 단일성분의 단점을 보완해 주므로 효력의 범위가 넓다.

③ 알데히드제제 : 글루타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가 있으며, 독성이 있으므로 사람과 가축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글루타알데히드 : 1-2%의 농도로 사용하며 유기물이 다소간 있더라도 소독효과가 좋다. 값이 비싼 편이어서 대량으로 사용하기에는 소독비용이 많이 든다.

○ 포름알데히드 :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40% 용액을 말함)을 8%의 농도로 하여 사용하며 글루타알데히드와 소독효과가 유사하다.

○ 포르말린 훈증소독 : 포르말린을 과망간산칼리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거나 시판되는 파라포르말린을 태워서 훈증가스를 발생시켜 소독하는 방법으로서 밀폐상태에서 15~24시간 동안 처리하여야 충분한 소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스 흡입시 생체에 매우 유독하고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물기를 피해야 하는 전가전자제품의 소독 외에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포르말린 훈증소독 후에는 절대로 훈증가스를 흡입하지 말고 완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④ 산화제 : 산화작용으로 바이러스의 단백질 등을 파괴하는 소독제로서 주로 염소 또는 산소계 성분으로 구성된다. 염소계는 비전리형인 차아염소산(HClO)을 발생시켜 살균력을 발휘하게 된다. 산성일수록 살균력은 증대되고 알칼리성에서는 살균력이 감퇴된다.

○ 차아염소산제제 : 차아염소산(hypochlorite)은 pH 6~9 사이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0.175% 이상의 농도로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유기물이 혼합된 상태에서는 소독효과가 낮아지며 15℃ ~ 20℃ 이상의 온도에서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여 급속히 분해되기 때문에 소독약을 자주 갈아 주어야 한다. 호주 농무성 등에서 구제역바이러스에 대한 소독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 이염화이소시아나트륨(Sodium Dichloroisocyanurate; NaDCC)제제: 산화제의 일종으로 정제나 산제의 형태로 시판되고 있으며 수용액상태에서 매우 불안정하므로 사용하기 직전에 물에 타서 사용해야 한다.

4. 소독제의 적용대상에 따른 소독방법

소독대상	권장소독제
축체, 사람	구연산
축사내부(축산기구)	가축이있을 경우: 구연산 가축이없을 경우: 알칼리제, 염소제
축사외부	알칼리제
소독조	알칼리제, 알데히드제
차량	복합산성제, 알칼리제, 산성제제
음수소독	염소제

- 발판 소독조 및 차량 소독 : 농장의 입구 및 각 축사입구에 설치하되 발이나 차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주당 2~3회 교환해 준다. 염기제제, 알데히드제제 등 비교적 유기물에 강한 소독제가 추천된다. 차량의 소독에는 산성제제나 염기제제, 염류와 산성 복합제가 권장되지만 강한 알칼리에는 차량의 도색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 토양 및 바닥소독 : 사체 및 토양소독, 가축이 없는 축사바닥은 주로 생석회나 가성소다를 이용한다. 현재는 소독약 물량이 충분하므로 화재의 위

힘 또는 눈에 닿을 경우 실명할 위험성이 있는 생석회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생석회 :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화공약품에 속하며 산도(pH) 11-12의 강염기로서 면적 m^2 당 300 ~ 400g(평당 약 1kg)을 뿌려준다. 반드시 흙에 물을 먼저 뿌려 바닥이 젖은 상태에서 생석회를 뿌려주거나, 물로 5% 생석회 용액(물 19바가지에 생석회 1바가지)을 만들어 살포한다. 생석회 용액을 만들 때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생석회를 넣어야 한다.

생석회를 보관할 때는 수분이 닿으면 화재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수분이 닿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 인화성 물질을 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 정도의 열을 내면서 소석회가 된다.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소독조 등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절대로 사람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눈에 들어가면 실명하게 되므로 특히 어린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 사용예 : 사체 매장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체 위에 생석회를 뿌려주되, 소 8두 또는 돼지 16두당 약 120 l (6-7말)를 뿌려준다.

- 분변소독 : 분변은 배설 직후에는 알칼리성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산성으로 변하므로 소량일 경우에는 산성소독제를 듬뿍 뿌려준 후 땅에 묻는다. 그러나 슬러리 탱크와 같이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pH 2이하 또는 11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 1주일이상 둔 후, 중화시켜 비축산용 농지에 뿌려줄 수도 있으나 주위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소독작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소독제의 현장적용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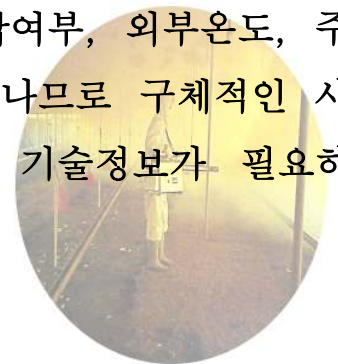
소독제는 종류에 따라 산도(pH)가 다르고 작용기전도 다르므로 현장에서 소독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가령, 강염기인 생석회 가 뿌려진 바닥이나 축사내부 등에 산성 소독제를 뿌리면 서로가 중화되어 아무런 소독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 외에도 서로 혼합을 피하여야 하는 성분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동일한 소독대상 물질에 여러 종류의 소독제를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대부분의 소독제는 생체에 접촉하면 해롭기 때문에 소독시에는 눈, 호흡기, 피부 등에 닿지 않도록 반드시 얼굴전체를 덮는 보호안경(고글),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머리 켈(위생모자) 등을 착용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또한 수생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화되지 않은 대량의 소독약제가 하수구로 흘러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소독제의 희석은 축사 내·외부, 축산기계·기구류, 소독조 및 발판, 차량, 흙, 축체 등 소독대상에 따라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농도대로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희석시 소독제 원액에 물을 넣어 희석하지 말고, 물에 소독제 원액을 섞도록 한다.

동일한 성분일 지라도 농도와 다른 성분과의 혼합여부, 외부온도, 주위환경의 차이 등에 따라 효과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므로 구체적인 사용요령은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고 구체적인 기술정보가 필요하면 제조회사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소독제 성분별 적용대상 및 특징

분류	성분명	주요적용대상	사용농도	작용시간	소독제의 특징 및 주의사항
염기제	탄산소다	사체, 축사, 환경, 물탱크	4%	10분	◦ 분변이 있는 곳에도 사용가능 ◦ 알루미늄계통에는 사용하지 말것
	가성소다	사체, 축사, 환경, 물탱크, 차량, 기계류, 의복	2%	10분	◦ 분변이 있는 곳에도 소독효과를 발휘 ◦ 매우 효과적이나 차량등 금속 부식성 ◦ 눈과 피부에 자극이 있으므로, 사용시 장갑, 의복등과 같은 보호용구 착용(사람) ◦ 가격저렴 ◦ 강산과 접촉을 피할 것
산성제제	구연산	사체, 사람, 분뇨, 배설물, 주택, 차량, 기계류, 의복	0.2%	30분	◦ 침투력이 약하므로, 단단한 표면에만 사용(중성계면활성제를 원액의 1/1000로 희석하여 혼합사용하면 침투력 증가) ◦ 사람, 축제, 의복 소독에 적용가능
	복합염류	기계류, 차량, 의류, 소독조	2%	10분	◦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축체 제외)
산화제	차아염소산	축사, 주택, 의류	2-3% 유효염소	10-30분	◦ 분변, 우유 등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금지 ◦ 유기물에 의해 효과가 감소되므로 반드시 사용전에 청소 ◦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 ◦ 눈과 피부에 독성이 있음.
	이소시아나트륨	축사, 주택, 의류	0.2-0.4%	5분	◦ 분변, 우유 등이 있는곳에 사용금지 ◦ 반드시 사용전에 청소 ◦ 정제이므로 사용 직전에 물에 희석 사용
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가스	전기기구, 벧짚, 건초	가스	15-24시간	◦ 물을 피해야 하는 자동차내부, 전기기구 등의 소독에 사용하며, 공간을 완전밀폐후 하룻밤 정치 ◦ 소독후 완전 환기 철저 및 가스흡입 금지 ◦ 유독성의 가스 외부 방출금지 주의 ◦ 물, 차아염소산, 염소등이 있을 경우 사용금지
	글루타알데히드	축사내외부, 차량, 소독조	2%	10-30분	◦ 사용시 장갑, 의복등과 같은 보호용구 착용 ◦ 적당한 환기조건하에서 사용 ◦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한 실온 보관
	포르말린	사료, 의복	8%	10-30분	◦ 자극성 가스를 배출: 사용자 주의 (글루타알데히드에 준함)

* 호주(Ausvet plan, 1996), 영국(1999년 가축질병소독제 관련 법규), 미국(APHIS FMD eradication manual)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 방역과 제공

6

| **부분 살처분농장의 돼지 관리요령****1. 실시배경**

- 부분 살처분 농장의 경우, 농장 내 바이러스가 잔류되어 돼지이동, 사람, 차량을 통해 다른 농장 및 지역으로 전파 우려

2. 추가조치

- 발생농장에서의 구제역 안정화 프로그램
 - ㄱ. 모돈 등의 구제역 면역을 안정화 시킨다.
 - 전 모돈군 2회 구제역 백신 완료.
 - 2개월간 후보돈의 유입 중단(폐쇄돈군 유지)
 - ㄴ. 발병 돈사 소독
 - 돼지의 이동 후 모든 분변과 기구 등을 세척, 건조, 소독을 실시.
 - 세제(비눗물)를 이용하여 기구와 스톨 등을 세척 한다.
 - 빈 돈사의 슬러리는 2% 가성소다를 이용하여 소독 한다.
 - ㄷ. 위축 및 임상증상 돼지의 치료
 - 환부를 강옥도 등으로 2차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소독
 - 페니실린, 아목사실린 주사 치료를 한다.
 - ㄹ. 후보돈 입식
 - 임상증상이 멎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보돈 입식.
 - 구제역 백신이 2회 접종 하고 3주 이상된 돼지를 입식
- 해당농장에서 출생된 자돈, 출하돈의 이동은 구제역 비발생 지역으로 이동을 금한다.
- 살처분 이후 출생된 자돈은 생후 60일령, 100일령에 구제역 백신을 추가 접종.
- 기타 방역지침은 구제역 발생지역에 준한 방역 행동요령으로 유지한다.

(사)대한양돈협회 구제역방역대책협의회

7

이동제한 농장의 가축분뇨 처리요령

1. 기본원칙

- 가. 우선 농가에서 보유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한 후 보관하거나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고 외부의 반출은 최대한 억제한다.
- 나. 이동제한 기간이 길어져 농가 자체 처리능력을 초과할 경우 시장·군수는 공동매립지 또는 저장시설 등을 확보한다.
- 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이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에서 우선 지원한다.

2. 발생농장의 가축분뇨 처리

- 가. 농장에서 소독처리한 후 이동제한 해제후 매립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자체 농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한다.
- 나. 이동제한 해제후 농장 밖으로 가축분뇨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 등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을 허용하되, 반출기록을 유지하고 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도·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위험지역(3km이내)의 가축분뇨 처리

- 가. 농장내에 매립하거나 이동제한 기간동안 농장내에 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을 활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농장내 처리시설 및 보관능력의 부족한 경우 위험지역내 공공처리장 또는 공동자원화시설로 가축분뇨를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위험지역내 농장에서 보유한 차량 또는 공공처리장 등에서 보유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한 후 이동한다.

4. 경계지역(3~10km)의 가축분뇨 처리

- 가. 이동제한 기간동안 농장내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 나. 농가 등이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보유한 경우 정화처리후 방류할 수 있다.
- 다. 농가에서 퇴비·액비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퇴비·액비로 만든 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라. 농장내 처리시설 및 저장능력이 부족한 경우 경계지역내 공공처리장 또는 공동자원화시설 등으로 가축분뇨를 반입할 수 있다.

(사)대한양돈협회 구제역방역대책협의회

1. 개요

가. 수세 및 소독의 목적

- 1) 농장 내 구제역 바이러스 및 다른 병원균의 제거
- 2)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농장의 돼지가 비워진 뒤 새로이 돼지를 입식하기 전 기존 농장내 존재하던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세/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질병 발생농장(구제역 등) 입식 전 점검표(아래 각 항목 수세 및 소독실시)

구분	점검 내역	점 검 결 과(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면 □에 ✓)
입식전 농가 점검	청소· 소독	주택·관리사(입구소독조□, 내부□, 외부□, 거주시 사용물품□, 화장실□) 축사(외부□, 입구소독조□, 바닥□, 울타리□, 벽□, 원치커턴□, 기둥□, 천장□, 기구보관 등 창고□, 냉장고□, 연막소독□, 살충제 살포□, 분뇨제거□) 운동장(바닥□, 울타리□, 분뇨제거□) 착유실(착유기□, 냉각기□, 바닥□, 울타리□, 벽□, 천장□, 칸막이□, 분뇨제거□) 작업도구(트랙터□, 차량□, 손수레□, 삽□, 청소도구□, 인공수정기구□, 거세도구□, 기타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소각· 매물	구제역 발생시 급여중이던 사료□, 건조□, 볏짚□, 보관사료□, 음식물 찌꺼기□, 의복□, 신발□, 장화□, 소각가능한 물품□ 빗자루 등 소각 가능한 작업도구(빗자루□, 기타□)
	※ 입식전 농가점검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아니되며, 미흡한 사항을 완벽하게 보완 조치한 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 추진	

다. 소독의 실시

- 1) 반드시 축사 내부와 그 주위를 소독하여야 한다.

가) 축사 내부 : 분무소독(가성소다 2%액)⇒훈연소독⇒건조(4일 이상)

나) 축사 외부 : 분무소독(가성소다 5%액) 및 소독제도포(생석회)

2. 농장 수세 및 소독 일정 : 농장의 상황에 맞추어 변경 가능

가. 일정표 : 예시

구 분	1~7일차	8일차	9~13일차	14~21일차	22~28일차	28일차 이후
1차 수세	○					
1차 소독		○				
돈사 건조			○			
2차 수세				○		
2차 소독					○	
돈사 건조						○

나. 수세 절차

- 1) 수세 과정 : 돈분제거 ⇒ 불림(2%가성소다 살포 및 물뿌림) ⇒ 애벌 수세 ⇒ 소독(2%가성소다) ⇒ 본 수세
- 2) 가성소다 2% 액 살포 : 관리자는 반드시 우의, 고무장갑, 보호안경 착용, 취급 주의 ⇒ 소독효과 뿐만 아니라 수세가 용이함 ⇒ 가성소다 살포후 1시간 이내 세척해야함(부식방지)

다. 소독 방법

1) 돈사 내부

- 가) 돈분 피트, 맨홀 등은 2% 가성소다 용액을 채워 놓는다.
- 나) 보온등, 사료급여기 등은 구제역바이러스에 효과 있는 소독약을 이용하여 소독 실시
- 다) 건조 후 훈연소독(12시간 밀폐, 24시간 환기) 실시(훈연소독용 블록 사용)

2) 돈사 외부

- 가) 농장내 입구 및 도로에 생석회 도포(3.3m^2 당 생석회 1kg)
- 나) 돈사 주변 제초 작업 후 5% 가성소다 용액 살포(땅이 젖을 정도로 도포), 생석회 도포 ⇒ 바람이 불 경우 바람을 등지고 살포 및 도포

3) 매립장 소독

가) 생석회를 주 1회 도포

나) 생석회로 덮여 있는 매립지 위에 파리약, 탈취제 등도 살포 할 수 있다.

4) 사무실 소독

가) 각 부서사무실 등은 12시간 훈연 소독 후 24시간 환기 후 출입.

나) 소각 가능한 물품은 전부 소각 처리한다.

5) 피복류 소독

가) 작업복은 세탁전 소독약에 1시간 이상 담구어 놓는다.

3. 사진으로 보는 농장 수세 및 소독

	
돈사내부 돈분제거	돈사내부 돈분제거
	
물 뿌림(물을 뿌려 잔존 돈분등을 불림)	애벌 수세 : 육안상 보이는 유기물들을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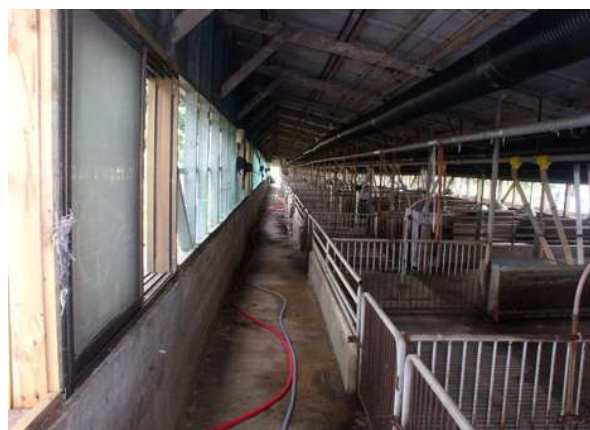
가성소다액 만듦 : 2% 용액



가성소다 살포 : 소독 및 잔존 유기물 제거를 용이하게 함. 필히 안전장구 착용



본 수세 : 천정, 벽, 바닥 순으로 실시



본 수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돈사



훈연소독 실시 : 돈사를 완전히 밀폐한후 실시. 돈사에 습기가 많으면 효과 상승



훈연소독 : 12시간 밀폐. 환기후 돈사 출입



분리 가능한 기구/장구 해체



가능하다면 바닥재도 분리 한다



분리한 사료라인 세척 및 소독



바닥재 분리후 세척 및 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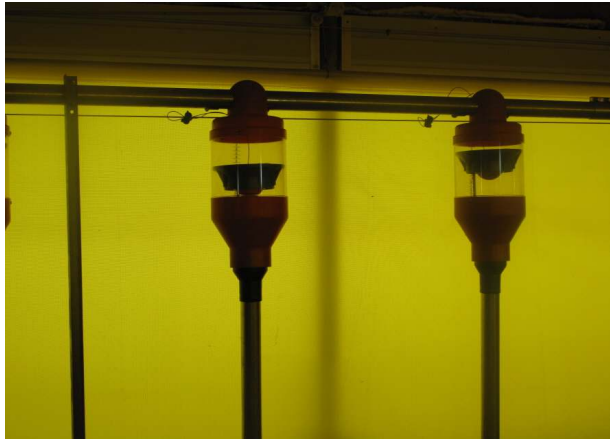
돈사의 창문 분리



창문도 분리하여 세척 및 소독



급여기도 분리한 후 세척 및 소독



자동 급여기통 세척 및 소독



돈사주변 제초 작업실시



맨홀 청소 : 돈분 제거후 가성소다 2% 사용



사료빈 세척 및 소독 : 낙상주의



돈사주변 소독약 도포 : 가성소다 5%액 또는 생석회



돈사 외벽 세척 및 소독



돼지 이동 통로 세척 및 소독



수세/소독 완료된 돈사 : 최종 수세/소독 완료된 후 5일 이상의 건조기간을 가져야 한다.



바닥재, 사료라인 등 분리한 기구/장구의 원상복구 : 돼지 입식전 다시 한번 점검 한다.

- ※ 위의 과정중 돈사의 수세와 소독은 2회 이상 반복한다.
- ※ 기구/장구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전자기기들은 훈연소독을 반드시 실시한다)
- ※ 돼지 입식전 분리한 기구/장구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

가. 가성소다 취급법

- 1) 인체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 2) 가성소다를 다루는 관리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가) 보호우의(모자가 달린 우의), 고무장갑, 고무장화, 보호안경 등
 - 나) 가성소다 분무후 보호장구를 벗기 전에 다른 관리자가 물을 보호우의 위로 뿌려준다.
 - 다) 물로 보호우의를 세척한 후 보호장구를 벗는다
- 3) 눈 또는 피부에 자극을 느끼면 즉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한다.

나. 훈연소독 취급법

- 1) 사용법 : 훈연소독용 블록제를 사용하는 방법
 - 가) 블록에 불을 붙여 전체에 불이 붙도록 한다. 전체에 골고루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후 불을 끈다(철로된 양동이를 뒤집어 썬워 불을 꺼뜨리며, 양동이를 제거한다)
 - 나) 불이 꺼지면 연기가 발생하며, 훈연소독이 실시 된다.
 - 다) 블록 1개당 30평정도의 돈사 소독가능(돈사 크기에 맞게 개수 선택)
- 2) 주의사항
 - 가) 훈연소독시 방독면 사용(시중에서 판매)
 - 나) 연기가 발생하면 이동통로 확인이 어려우니 사전에 출구쪽 동선을 숙지한다.

(사)대한양돈협회 구제역방역대책협의회

9

돼지 구제역백신 예방접종 프로그램

- 긴급 예방접종 이후 면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예방접종 프로그램 적용

접종구분	예방접종 프로그램
긴급접종	1) 모든 일령의 돼지에 1차 접종 및 4주후 2차 접종 2) 1차 접종 이후 태어나는 자돈은 1일령 접종 후 4주령에 2차 접종 3) 매 4개월 마다 재접종
정기접종	1) 모 돈 : 2차 접종이후 분만 3-4주전 1회 추가 접종 2) 자 돈 : 2회 접종 (8주, 12주) 3) 후보돈 : 예방접종 확인 후 입식(접종시기 확인 후 매 6개월 간격 보강접종) 4) 웅 돈 : 2차 접종이후 매 6개월 간격 보강접종 5) 2차 예방접종한 모든 돼지 : 6개월 간격 보강접종

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 살처분 농장 직원은 다른 농장으로 취업시 구제역 전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2. 살처분 일로부터 2주간 농장에 머물며 외부출입을 삼간다.
3. 돼지와 접촉했거나, 오염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로 소독하고 실내에 말려둔다.
4. 소독이 불가능한 물건중 소각할 것은 소각한다.
5. 농장내에 신었던 신발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폐기한다.
6. 샤워와 손발톱 제거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
7. 다른 농장 취업전 최소 3일간 돼지와 접촉을 금한다.

(사)대한양돈협회 구제역방역대책협의회

구 분	기 준
매몰기준	○ 종돈, 모돈, 후보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어미 돼지에서 태어난 자돈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 ○ 비육돈: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 돈사 또는 돈방(밀폐된 경우에 한함)
이동제한 해제	□ <u>축종별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예방매몰 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시·군</u> ○ <u>위험·경계지역 구분하지 않고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해제</u> □ <u>최근 2주간 발생농장이 없는 시·군</u> ○ <u>축종별 1차 접종경과(경계지역 2주, 위험 3주)후에 임상·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u> - 발생농장 : 임상+혈청검사 (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방별 3두) - 비발생농장 : 임상+혈청검사 (경계지역은 대상 농장의 15%, 위험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
수 매	○ <u>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후 수매하고,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후 수매</u> - 발생농장: 임상검사+ 혈청검사(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사별 샘플검사) - 비발생농장: 경계지역(임상검사), 위험지역(혈청검사, 농장당 16두)
재입식	○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이 경과된 이후 입식시험 없이 사육 조치
가축분뇨 처리	○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공자원화시설 이용 ※ 별도 지침에 의해 2/2~13일까지는 가축분뇨차량 일시 통제(관련: 축산정책과-547, 2011. 01. 30)
시행일	○ 2011. 1. 31일부터 (구제역 상황에 따라 변경 고지될 수 있음)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2126(2011.01.31.)